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대·소형텐트 임차 사업』

과업지시서

1. 사업명: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대·소형텐트 임차 사업
2. 설치장소: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유·무료구역 및 임시주차장
 - 가. 규모: 일산호수공원 일원(노래하는분수대 ↔ 고양꽃전시관 /유·무료 구역)
 - 나. 대지지형: 광장 부지(보도블록 및 아스팔트) 및 녹지대(잔디구역)
3.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4. 5. 31. 까지
4. 행사기간: 2024. 4. 26.(금) ~ 5. 12.(일) / 17일간 평일·주말·공휴일 09:00~19:00
 - 가. 설치 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4. 4. 20. 한.
 - 1) 대형텐트: 2024. 4. 9. 한.
 - 2) 소형텐트: 2024. 4. 20. 한. ※ 설치 위치조정 및 보완 포함.
 - 나. 관리 운영
 - 1) 설치 시점부터 ~ 2024. 5. 12.(일) / 17일간
 - 2) 철거 시작부터 ~ 철거완료까지. ※ 자재 현장 철수 포함.
 - 다. 철거 기간: 행사종료 후 ~ 2024. 5. 19. 18:00까지 ※ 자재 현장 철수 포함.
 - 1) TFS 대형텐트
 - 가) 바닥재: 2024. 5. 17. ~ 5. 19.
 - 나) 라이너: 2024. 5. 19. ~ 5. 20.
 - 다) 기타부속: 2024. 5. 21. ~ 5. 22.
 - 라) 골조: 2024. 5. 22. ~ 5. 29.
 - 2) 소형텐트
 - 가) 바닥재: 2024. 5. 17. ~ 5. 18.
 - 나) 골조: 2024. 5. 18. ~ 5. 22.
5. 계약수량 및 시설개요

《대·소형텐트 사양 및 관리 : 다음의 각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 대형텐트: T.F.S 1개 동(2,200㎡ / 40m × 55m)
 - 나. 소형텐트
 - 1) MQ형: 227동(5*5 162동, 3*3 65동)
 - 2) 큐브형: 6동(5*5 3동, 3*3 3동)
 - 3) 바닥재: 설치(3,924㎡), 바닥재 임차(1,965㎡)

다. 사 업 량

구 분	분 류	규 격 및 수 량	설 치 내 용
대형텐트	TFS텐트	40M × 55M / 1동(2,200㎡)	알루미늄 골조, PVC 막지
	바닥재	40M × 55M / 2,200㎡	목구조 조립식 판넬
	라이너	1식 / 1,400㎡	방염 폴리에스테 커튼
	출입구	4M / 2개소	2M 강화유리 2조 1개소
	연결통로	2M / 2개소	꽃전시관 측면 출입구 ⇔ 대형텐트 연결 2개소
	에어커튼	(w)900 × (h)290 / 8대	출입구 개소별 4대 × 2개소
	입구 아치	(w)5000 × (h)2700 / 2개소	블록 부스 프레임(사인물포함)
소형텐트	MQ텐트	5M × 5M / 162동	출입구, 목구조 조립식 판넬 바닥재 포함
		3M × 3M / 65동	
	큐브텐트	5M × 5M / 3동	
		3M × 3M / 3동	
	보유분 바닥재 설치	블록 판판 / 1,993㎡	설치 분량 환산 5×5 145동(3,625㎡)
	부족분 임차 및 설치	블록 판판 / 1,965㎡	3×3 37동(3333㎡)

※ 소형텐트 바닥재 설치·철거 포함(바닥재는 발주처에서 공급, 부족 분량은 업체측에서 전량 임차)

6. 과업 내용

가. 설치 일반

1) 기술사항

가) T.F.S 대형텐트

(1) T.F.S 텐트골조

(가) 구조형태 : 강화알루미늄 구조로써 조립해체가 용이해야 한다.

* PVC3중막 아크릴코팅 처리로서 자외선, 곰팡이차단 및 방염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제작·설치기준 : 풍속 30m/sec이상 ※설치현장 기준에 따름

(다) 규 격

구 분	구 격	수 량	면 적
(가칭)실내전시 2관	폭 × 길이	40M×55M	약2,200㎡
	연결통로	폭5M, 길이 2~3M	
	도어(DOOR)	폭4M(강화도어 2M×2조)	

* 기둥/트러스 (310mm × 130mm 이상)

* 중앙 지붕 높이 (텐트 폭40m: 14m 이상)

(라) 재 질: ALUMINUM

(마) 내부라이너

구 분	구 격	설 치 면 적	비 고
(가칭)실내전시 2관	라이너	40M×35M	1,400㎡
			PE 방염커튼 원단 기준

- 불연성 섬유를 사용하며, 실내 디자인용으로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한 제품

(2) 바닥재

구 분	구 격	설 치 면 적	비 고
(가칭)실내전시 2관	카트리지 패널	40M×55M	2,200㎡
			판넬 형

(가) 바닥재 작업

- 카트리지 패널의 규격은 1,220mm×2,440mm×80mm로 끝 단면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하여 상부 합판은

12mm 방수 합판으로 한다.

- 바닥재는 카트리지 패널 바닥재 설치 또는 1㎡당 500kg 이상의 수직하중에 바닥재가 휨이 없는 재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 한다.
- 설치되는 바닥재 상호 간 간격이 없어야 하며 상승각 10cm 및 레벨을 잘 맞추어 진동이 생기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만약 사용 중 이상이 생기면 즉시 정상으로 조치해야 한다.
- 각 출입구 개소 외 필요 개소는 목공으로 마감하여 수평 처리한다.

(3) 대형텐트 공통

(가) 대형텐트 설치 전 구조 안전 검사를 시행하고 확인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구조물 구조계산서 및 구조 안전, 내진설계 확인서.

- (나) 지붕 막은 PVC 3중 막 아크릴코팅 처리로서 자외선, 곰팡이 차단, 표면이 청결하여야 하며 방염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색은 불투명(백색)으로 한다.
- (다) 기후 및 강풍 등 행사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텐트의 끝부분은 유선형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 (라) 대형텐트 기초는 각종 풍압하중에 견디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마) 기타 기술 및 설치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 (바) 개소별 출입문 설치는 강화유리 양개 문 2조로 한다.
- 재질 및 규격 : 알루미늄 재질 / 양개문(1조) (w)1,800mm× (h)2,100mm
- (사) 모든 텐트 하단 부 바닥부와 닿는 부분은 코팅 처리 및 고정 처리하여 강수 및 폭우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아) 실내 라이너는 견고하게 부착하며 천정의 높이를 고려하여 설계

나) 소형텐트

(1) 용어 설명 및 규격

- (가) PIPE (ALUMINUM PIPE): 부재의 주재료로 ALUMINUM 6061로 KS인증과 구조계산에 의해 규격에 적합한 부품이어야 한다.
- (나) Connector (연결구): ALUMINUM 합금 주조물로 특수 제작한 부품이어야 한다.
- (다) STEEL WIRE ROPES (와이어): ALVE(연결구)와 ALVE를 사선으로 잡아주는 6mm의 호이스트용 아연도강연성 부품이어야 한다.
- (라) 십자 지주부품: wire와 wire를 잡아 cross 부분에서 막재를 받쳐주는 pipe의 받침대
- (마) 발 판: 상단의 pipe부분의 골격부분을 받쳐주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부품 이어야 한다.
- (바) 고정팩: 막재의 설치후 흔들림을 막기 위한 부품으로 600/19mm의 철근제품
- (사) 막재 부문: SOL TARPULIN을 기본으로 하여 고주파 열처리 가공한 후 한 면에 pvc coating으로 자외선 차단 및 오염방지, 불연 가공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소형텐트 규격 및 수량

구 성		수 량	설치장소	비 고
소형텐트 (MQ텐트)	5m×5m	160동	도면상 표기	
	3m×3m	63동		
소형텐트 (큐브텐트)	5m×5m	3동		
	3m×3m	3동		
바닥재	보유분 설치	1,993㎡		재단법인 보유 바닥재 설치
	부족분 임차 설치	1,965㎡		부족분량 임차 및 설치

(3) 소형텐트 공통

- (가) 소형텐트 설치 시 바닥구조물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고정 핀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바닥구조물 파손 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귀하여야 한다.
- (나) 소형텐트 설치 시 기상 상태(강풍)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우천 시를 고려 각 텐트와 텐트 사이에는 물받이를 설치, 전시 품목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막재 설치 후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 팩과 막재 연결 시 안전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 (다) 텐트 설치 후 손·망실시 즉시 보수(교체)하여야 하며, 우천 시 누수 텐트에 대하여 즉시 유지보수를 하여 누수방지를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 경비는 임대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라) 운영관리 텐트는 반드시 천막에 색이 있는 텐트로 하여야 한다.
- (마) Wall 4면은 동일 재질이어야 하며 청결한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바) 소형텐트 바닥재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의 재산을 사용하여 설치하며, 부족한 물량은 수급자 재산으로 설치한다.
- (사) 사용한 바닥재는 청소하여 제자리에 배치한다.
- (아) 설치 및 철거 시에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자) 모든 매표소, 운영 텐트는 설치 후 앞쪽으로 10m 햇빛가림 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리 운영 일반**1) 대·소형텐트 운영 및 관리**

- 가) 대·소형텐트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관리 운영시간 : 평일, 주말 08:00 ~ 20:00
- 다) 업체 직원 2명 이상의 인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전체 임차 설치 시설물을 관리한다.
- 라) 법인에서 관리 운영에 대하여 추가 인원 배치 요구 시 이에 대한 비용은 임대업자 부담으로 한다.

2) 대·소형텐트 및 구성품 훼손 등에 관한 사항

- 가) 대·소형텐트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훼손, 도난, 수리 등)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3) 대·소형텐트 및 구성품의 고장 수리 등, 이용자 불편 사항 해소

- 가) 임대업자는 우리 사무처 직원 또는 운영 요원 순찰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임대업자의 비용부담

- 가) 대·소형텐트 고장에 대한 수리 비용은 임대업자 부담으로 한다.
- 나) 제시된 견적 범위 이상에 대한 모든 제비용은 임대업자 부담으로 한다.

5) 설치 위치 변경

- 가) 소형텐트 및 구성품 설치 이후 행사 전 또는 중 소형텐트 및 구성품의 위치를 1동당 1회(총 50회)에 한하여 이동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임대업자 부담으로 한다.

7. 일반사항**가. 용어의 정의****1) 감 독 관**

“감독관”이란 과업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꽃박람회 직원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감독관은 수행 업체의 책임자 및 과업수행원에 대하여 시행에 필요한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2) 과업수행업체

“과업수행업체(이하 ‘수급자’)라 함은 과업수행업체가 계약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업무 전반에 관하여 책임 있게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작업은 사전에

승인한 시안에 의해 수행하고,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관련 규정에 의거 감독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 해석에 따른다.

- 다. 본 과업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 라.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업체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꽃박람회에서 교체를 제의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마. 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소형텐트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여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바. 본 지시서의 목록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상의하여 공급한다.
- 사. 수급자는 모든 장비를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필하고 설치해야 하며, 설치규격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아. 과업수행업체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 기존 시설물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필한 뒤 시공하고 철거 뒤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자. 과업수행업체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 등 안전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및 해체 시 발생하는 각종 인적·물적 사고 발생 시 소요 비용은 과업수행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 차. 과업수행업체는 대·소형텐트 설치완료 후 행사운영관리 기간 중 2명 이상 관리인력 현장 상주, 유사시(태풍, 폭우 등) 긴급복구 등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카. 과업수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착수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 관리 기간에 현장 상주 인력 현황 및 비상 연락체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등을 사업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사업 완료 시 완료계, 시설 설치전, 설치중, 설치완료, 철거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타.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소요량 증가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파.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부분은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8. 안전관리사항

- 가.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종사자와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나. “수급자”는 종사자와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안전보건관리 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일일 보고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후속조치 요구 시 이에 따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1) “수급자”는 일일 과업 시작 전 감독관에 보고 후 과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참여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 장비 상태 점검하고, 참여 종사자의 일일 안전교육 이행 여부를 안전보건관리 일지에 기록한다.
- 2) “수급자”는 일일 과업 종료 후 감독관에게 보고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정리 후 이때 현장 정리 이행 여부를 안전보건관리 일지에 기록한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후정산 관련사항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합니다.
- 2) “수급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2,840,000원(금이백팔십사만원)
-----------	-----------------------

- 3)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완료 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하자보수

가. 하자기간은 행사 기간으로 하며, 하자기간 외에도 “수급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 발생 시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10. A/S 범위

- 가. “수급자”가 작업한 범위 일체의 시설물을 A/S처리한다.
- 나. “수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A/S를 무상으로 처리하고, 하자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11. 계약의 해지조건

- 가. 임차 물품의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고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행사의 차질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사용에 대한 제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 기타 사항

가.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끝.